

〈별표83〉 중증화상환자 산정특례대상 분류표

약관에 규정하는 '중증화상환자 산정특례대상'은 '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-294호, 2023.1.1. 시행)' 제4조 별표3(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)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.

대상 및 적용기간	특정기호
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된 중증화상환자가 적용일부터 1년간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 *단, 등록기간 종료 후 2년 이내에 〈별표83-1〉(본인부담금 산정특례 중증화상의 상병명 및 수술명)의 수술을 받는 경우 1년간 재등록할 수 있음(V306은 제외)	
〈별표83-1〉 '본인부담금 산정특례 중증화상의 상병명 및 수술명'에서 중증도 기준의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상병에 해당하면서 체표면적 기준의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병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	V247
〈별표83-1〉 '본인부담금 산정특례 중증화상의 상병명 및 수술명'에서 중증도 기준의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상병에 해당하면서 체표면적 기준의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병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	V248
〈별표83-1〉 '본인부담금 산정특례 중증화상의 상병명 및 수술명'의 상병 중 제3호에 해당하는 상병(기능 및 일상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 한함)으로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	V305
〈별표83-1〉 '본인부담금 산정특례 중증화상의 상병명 및 수술명'의 상병 중 제3호에 해당하는 상병(기능 및 일상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 한함)에 대해 외래진료를 받은 환자가 수상(受傷)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입원하여 〈별표83-1〉 '본인부담금 산정특례 중증화상의 상병명 및 수술명'의 수술을 받는 경우	V306
〈별표83-1〉 '본인부담금 산정특례 중증화상의 상병명 및 수술명'의 상병 중 제4호에 해당하는 상병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	V250

주) 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중증화상환자 산정특례대상 해당 여부는 당시 시행되고 있는 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에 따라 판단합니다.